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68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김원이 · 김 윤 · 박지혜
김남근 · 허성무 · 이성운
전용기 · 김승원 · 강준현
문진석 · 정태호 · 이재관
의원(12인)

제안이유

정부는 현재 우리 수출기업의 활발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대외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을 제공하고 무역보험을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수출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대외거래 방식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정책금융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국내 영업 및 안전자산 위주의 민간 금융시장 구조와 대기업 중심의 기존 정책금융 체계 사이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수출 활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을 조기에 유동화하여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보험·보증과 연계한 투자를 통해 우

량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중소·중견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 등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의 경우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정부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역 및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출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무역보험공사가 보험·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거나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대외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보증연계투자 및 팩토링 업무 근거를 신설함(안 제53조제1항제3호·제4호, 제53조의3제2호·제3호, 제53조의5 및 제53조의6 신설).

나. 중소·중견 조선 회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 등 고위험 사업 등의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역보험 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4항 신설).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 보험·보증 연계 투자

4. 제5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 팩토링

④ 공사는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역보험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별도 계정의 구분,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중소기업 보험·보증 연계 투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팩토링에 관한 사항

제53조의5 및 제5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5(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연계투자) ① 공사는 보험·보증

관계가 성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 교환사채의 인수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방식
- ② 공사의 보험·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무역보험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사가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험·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산업통상부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53조의6(중소·중견기업 팩토링 운용) ① 공사는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등이 보유한 대외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등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대외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소·중견기업 팩토링”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중소·중견기업 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방법서에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3. 4. (생략)</p> <p>5. 제1호부터 <u>제4호</u>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p> <p>6. (생략)</p> <p>② · ③ (생략)</p> <p><u><신설></u></p> <p>④ ~ ⑥ (생략)</p> <p>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p>	<p>제53조(업무) ① -----</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제5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 보험 · 보증 연계 투자</u></p> <p>4. <u>제5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 팩토링</u></p> <p>5. 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p>7. -----</p> <p>-- <u>제6호</u>---</p> <p>8.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공사는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무역보험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별도 계정의 구분,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p> <p>제53조의3(업무방법서) -----</p>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1. (생략)

<신설>

<신설>

2. 3.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연계 투자에 관한 사항

3. 중소·중견기업 팩토링에 관한 사항

4. 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53조의5(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연계투자) ① 공사는 보험·보증관계가 성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 교환사채의 인수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 설>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방식

② 공사의 보험·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무역보험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③ 공사가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험·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
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
여 통보할 수 있다.

제53조의6(중소·중견기업 팩토

링 운용) ① 공사는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이하 “중소기업
자등”)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등
이 보유한 대외채권을 상환청구
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
업자등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대
외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
소·중견기업 팩토링”이라 한
다)를 할 수 있다.

② 중소·중견기업 팩토링 운용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방법서에서 정한다.